

2020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 부문)

2021. 2.

법 무 부

법무부

1. 평가 개요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 평가대상 : 법무부 「2020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의 59개 관리과제
- 평가지표 : 계획수립의 적절성 등 5개 항목 13개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측 정 방 법	배점
계획수립의 적절성(23)	계획수립의 충실성	○사전 조사 및 의견수렴 여부, 과제추진 계획의 적절성	8
	성과지표의 적절성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15
시행과정의 적절성 (13)	추진일정의 충실성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10
	협업 노력도	○관련 기관·부서와 유기적 협업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수범 사례	3
정책 효과성 (50)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25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계획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	25
정책 환류 및 소통 (14)	정책성과 분석을 통한 개선방향 제시(정책분석)	○과제별 정책효과, 문제점 진단 및 성과부진 원인분석, 대안제시 등	3
	정책 개선 의견 반영도	○평가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실적 등	3
	일반국민 등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도	○정책의 집행 등 정책 추진 단계별 현장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정도	5
	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	○평가위원에 대한 자료 제공의 충실성 ○제공 자료 내용의 충실성 등	3
가점(6)	홍보 노력도	○방송, 언론보도 등 홍보 실적 및 홍보 우수사례	(4)
	국정과제 반영도	○국정과제와 관리과제 간 연관성	(1)
	관리과제 실적 개선도	○관리과제 실적(평정점수 총점 순위)의 전년 대비 개선 정도	(1)

2. 평가 결과

(1) 총 평

법무부는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법무행정 비전으로,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등 5대 전략 목표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및 적폐청산의 차질 없는 추진’ 등 13개 성과목표 하위의 59개 관리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음

□ '20년 총 44개 부서의 59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매우우수 3개(5%), 우수 10개(17%), 다소우수 8개(14%), 보통 17개(29%), 다소미흡 9개(15%), 미흡 9개(15%), 부진 3개(5%)로 나타남
- 매우 우수한 과제는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등 3개 과제, 우수한 과제는 ‘국민권의 향상 및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변호사제도 개선’ 등 10개 과제이며, ‘사회지도층 범죄 엄단’ 등 3개 과제는 부진한 것으로 평가됨
- 전략목표별 평가 결과는 ① 인권의 가치 중시 및 약자 보호·지원, ②사회통합과 미래를 대비하는 국민의 법무정책 추진, ③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 ④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⑤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 순임

□ 총 59개 관리과제의 115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결과,

- 전체 115개 성과지표별 목표치에 대한 평균 목표달성률은 117.5%로,
 - ‘치료환경 개선을 통한 치료감호 내실화’ 과제의 성과지표인 ‘치료감호소 의료인력 결원율’ 등 90개 성과지표는 목표달성도 100%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5대 중대 부패범죄 엄단’의 ‘5대중대 부패 범죄·단속 실적’ 등 25개 성과지표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 성과 목표 미달성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책 환경의 변화 등으로 분석됨

(2) 주요성과

-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행정서비스 제공’ 및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 강화를 통한 이민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등 3개 과제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법률상담 감소를 감안, 취약계층이 PC·모바일을 통해 주거지 내에서도 쉽게 실시간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화상상담 시스템 도입 및 확대
- 기금 전입금 확충(824억→1060억)을 통한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행정서비스 제공>

- 단기사증 무효화 및 사증면제·무사증 입국 잠정 정지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지역의 외국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한 출입국 환경 마련
- 무사증(무비자) 입국 외국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입국을 돕는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 추진, 단수여권 소지 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허용, 생체정보 인식 스마트패스 시범사업 추진 등 출입국심사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 강화를 통한 이민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유관기관과 출입국정보 등을 적극적·선제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방지에 크게 기여
- 외국인등록증 영문 표기명(Alien Registration Card)의 ‘Alien’이 이방인 등 배타적·부정적 어감이 강하다는 의견을 적극 수용, 54년 만에 ‘Residence Card’로 변경하여 외국인에 대한 이질감을 완화하고 재한 외국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계기 마련

□ ‘국민권의 향상 및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변호사제도 개선’ 및 ‘전자민원 서비스 및 행정효율 제고’ 등 10개 과제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여성·아동 등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2명(경기고양, 부산동부) 지방 위주 추가 배치, 권역별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 피해자 국선변호사 간담회 등을 통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성폭력·아동 학대 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및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

<집단소송제 도입 및 활성화 추진>

-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 및 악의적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 확보를 위한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안 마련

* 분야 제한 없이 전면 도입, 소송 전 증거조사절차 및 증거조사 특례 마련, 소송허가요건 개선, 국민참여재판적용 등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실효적 관리체계 구축>

- 코로나 19 확산으로 '20. 2. 23. 감염병 재난 '심각' 단계가 발령, 위기 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대규모 단속활동이 잠정 중단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요 출입국사범, 국민안전 및 서민 일자리 분야 단속을 추진하여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예방기능 강화>

- 천안·의정부지역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설을 통해 지역간 비행 예방교육의 편차 해소, 학교·검찰·법원 등과 연계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초기단계 비행청소년에 대한 선도활동 강화 등을 통해 비행예방교육 전문성 제고

<참여형·맞춤형 법교육을 통한 준법의식 함양>

- 생애주기별 쉽고 재미있는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육부와 협업하여 청소년 법교육 3종 프로그램 구성 등 다양한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법질서 준수 의식 함양 및 준법문화 확산에 기여

<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가석방 내실화>

- 재범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사회적 약자(환자·장애인·고령자 등) 및 생계형범죄자 등에 대한 가석방 확대를 지속 추진하여 수형자의 개선의지를 촉진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로 사회 안전망 확충

<국민과 외국인이 공존하는 질서 있는 체류환경 조성>

- 코로나19에 대응 가능한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 마련 등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경제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방적이고 질서 있는 비자·체류정책을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

<공정하고 합리적인 난민제도 운영>

- 난민전담인력과 난민(전문)통역인 등에 대한 지속적 교육·평가를 통해 난민인정심사 역량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난민인정 심사를 위한 인적·제도적 기반 강화

<국민권의 향상 및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변호사제도 개선>

- 전관특혜가 개입할 수 있는 모든 단계별 개선안이 포함된 「변호사법」 개정안 마련,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 운영, 마을법률담당 공무원 제도 도입 등 국민권의 향상을 위해 노력

<전자민원서비스 및 행정효율 제고>

- 사용자 편의성·만족도 향상과 온라인 소통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및 법무포털시스템(법무샘) 서비스 개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원격근무·화상교육·비대면업무 활성화 추진

(3) 개선·보완 사항

- ‘부패로 인한 국가재정의 누수방지 및 국민의 감시·감독제도 마련’, ‘마약범죄 및 강력범죄 대응역량 강화’ 등 9개 과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국정농단 관련 보충수사 및 공소유지 철저>

- 국정농단 등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 필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여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확보 노력 지속 예정

<국민이 신뢰하는 국가송무 제도 정착>

- 코로나19 확산으로 송무교육, 공익법무관 세미나, 소송총괄관 회의 등의 활동이 미비하거나 개최하지 못하였음, 대면이 필요한 활동의 경우 집합제한이 완화되는 대로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며, 여의치 않은 경우 온라인, 화상회의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국가송무역량 함양 예정

<부패로 인한 국가재정의 누수방지 및 국민의 감시·감독제도 마련>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환수소송 사례발굴을 위해서는 실제 소송을 수행하는 소관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 서울고검 국가3팀 및 소관부처들과의 상시적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학계와의 교류를 통해 이론적 전문성 제고 예정

<금융·증권·조세 범죄 및 불공정거래 척결>

-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등은 전국 단위로 조직적으로 은밀히 진행되므로 세무자료 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필요, 금융·증권범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관련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는 등 클린피드백 제도 활용 지속

<기술유출·지식재산권 침해 사범 엄단>

- 온라인 범죄 증가에 따라,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유관기관과의 교류, 협력이 필요하나, 코로나 19로 인해 예정됐던 워크숍, 교육 등 행사가 취소되는 등의 어려움 있었음.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맞도록 '온나라 PC영상회의 시스템' 등 비대면 행사로 추진 예정

<통신 및 안보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장 강화>

- 긴급통신제한조치에 대한 법원 사후통제 필수화 등 관련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 신속 추진 필요, 긴급통신제한조치 법원 사후영장 필수화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21. 1분기) 및 국회 통과 노력

<마약범죄 및 강력범죄 대응역량 강화>

- 외국인 마약류사범 지속적 증가에 따른 대책 필요, 적발된 외국인 마약류사범의 별명·사진·휴대폰 포렌식 자료 등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축적된 자료 바탕으로 관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밀수사범 단속 강화 추진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 내실화>

- 교정시설로의 코로나19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사회적 처우를 중단하였으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재,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을 대비, 화상접견 등 다양한 언택트 프로그램 개발 및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개별 수용자 처우에 맞는 적용 프로그램 개발 예정

<국가 비상대비 및 재난 안전관리 역량 강화>

- 코로나19로 인해 방호실태 점검 등을 서면으로 대체 시행하고,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하지 않아 세부적인 지적사항 발굴이 어려움,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여 비대면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 예정

- ‘사회지도층 범죄 엄단’, ‘5대 중대 부패범죄 엄단’, ‘서민생활안전·대형안전사고·교통안전 관련 범죄 엄단’ 등 3개 과제는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사회지도층 범죄 엄단>

-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구조적 문제점에 대하여는 법무부 클린 피드백 시스템 등을 통해 부패유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제도개선 필요

<5대 중대 부패범죄 엄단>

- 국정농단 사건 공소유지에 대한 역량 집중, 특수전담 폐지 등으로 검찰 직접수사가 축소되면서 성과지표인 ‘5대 중대 부패범죄 단속’ 실적 저조

<서민생활안전·대형안전사고·교통안전 관련 범죄 엄단>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각종 간담회, 교육 등 미실시, 음주단속 방식의 변화, 음주문화의 변동 등으로 성과지표인 ‘음주·난폭·보복운전 등 근절 대응’ 실적 저조